

2018년 개정세법 – 개인과세 관련 주요내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 상장·비상장 법인의 대주주 범위 확대(2021. 4.부터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5%),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금융기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20%, 의결권 불행사 등 조건),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등]

2017. 12. 19. 공포된 세법(2018. 1. 1. 시행) 및 2018. 2. 13. 공포된 세법시행령(2018. 2. 13. 시행)의 개정내용 중 개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전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하여 38%, 5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하여 40%(종전 38%), 5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2%(종전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대주주 범위 확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및 제107조 제2항,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167조의8 제1항).

개정 전	개정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20% - 1년 미만 단기 보유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분: 25% (좌 등) - 2018. 1. 1.(중소기업 대주주는 2019.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유가증권시장 - ('18.4.1. 이후 주식양도시)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1. 이후 주식양도시)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신 설〉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좌 등) - ('21.4.1. 이후 주식양도시)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 ('18.4.1. 이후 주식양도시)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1. 이후 주식양도시)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신 설〉	○ 코스닥시장 (좌 등) - ('21.4.1. 이후 주식양도시)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 ('21.4.1. 이후 주식양도시)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우대세율(10%) 미적용 - ('18.4.1. 이후 주식양도시) 지분율 4% 또는 종 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1. 이후 주식양도시) 지분율 4% 또는 종 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신 설)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좌 동) - ('21.4.1. 이후 주식양도시) 지분율 4% 또는 종 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	---

3.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의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자료 확보 목적에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대상에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174조의2).

개정 전	개정
□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대상 ○ 파생상품 거래내역 ○ 협회장외시장(K-OTC)를 통한주식 장외매매 거래내역 (추 가)	□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대상 추가 (좌 동) ○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 장주식 거래내역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인정 한도액 합리화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 기간 보유차량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 산입한도액의 월할 계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개정 전	개정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필요경비산입한도 액: 800만원	□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 마련

〈추 가〉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 (1,000만원 이하) 100%,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추 가〉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 (좌 동) ○ 1년 미만의 과세기간* 및 과세기간 중 취득· 처분 -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 로 이전한 경우
--	--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운행기록부 미작성의 경우 2018. 2. 1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적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34조의2).

개정 전	개정
□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적용 요건 -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신 설〉 〈신 설〉	□ 증여세 과세 강화 ○ 적용 요건 추가 (좌 동)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인 경우 -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40%) × (주식보유비율 - 10%) - (중소기업)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중견·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견·중소기업일 것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소속기업은 제외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경 -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좌 동) ○ 중견·중소기업 범위 제외대상 확대 (좌 동)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기업은 제외
--	--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6.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

공익법인을 통한 자선·장학·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주식 보유한도를 20%로 상향하면서, 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의무지출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

개정 전	개정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 등: 5%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 10% 〈신 설〉	□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조정 (좌 동)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 2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정관으로 규정) -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일 것 - 2018. 1. 1. 이후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산세 부과 ○ 출연재산을 3년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추 가〉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의 1% 〈추 가〉	□ 사후관리요건 추가 (좌 동) ○ 성실공익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 20% 보유)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2018. 1. 1. 이후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의무지출제도 강화 (좌 동) ○ 성실공익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 20% 보유): 출연재산가액의 3%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7.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상속세의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개정 전	개정
□ 물납 한도 ○ 물납에 총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세 납부세액 X $\frac{(\text{부동산} + \text{유가증권 가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물납 한도 축소 ○ 물납한도 = MIN 【①, ②】 ① 현행 물납한도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 가액 - 상장유가증권 가액(처분제한 주식 등은 제외)

□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 비상장주식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선순위 물납재산*을 물납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국·공채, 상장주식(처분이 제한된 경우), 부동산 〈추 가〉	□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강화 (좌 등) ○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가액 **상속세 납부세액 -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	--

※ 위 개정규정은 2018. 4. 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8.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적용기한을 종전 2017. 12. 31. 에서 2020. 12. 31. 으로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개정 전	개정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되,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7. 12. 31. 까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할증률 <table><tr><th>지분율</th><th>일반</th><th>중소기업</th></tr><tr><td>50% 이하</td><td>20%</td><td>10%</td></tr><tr><td>50% 초과</td><td>30%</td><td>15%</td></tr></table>	지분율	일반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적용기한을 2020. 12. 31. 까지 연장
지분율	일반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개정 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 법인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 합계액 이 3억원 이상인 개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좌 동)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19. 7.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안) 보류

당초 정부에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형평 제고 및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8년 세법개정시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 시행령 제17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관련).

개정 전	개정 안	수정 안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 과 세 범위 ☐ 비상장 주식: 모두 과세 ☐ 상장 주식 - 장외 거래: 모두 과세 - 장내 거래: 대주주 과세 ▪ 대주주 범위: 25% 이상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상장 주식 과세 범위확대 (좌 동) ☐ 상장 주식 (좌 동) - 대주주 범위 확대 ▪ 25% → 5% 이상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 보완과 함께 2018년 세법 개정시 검토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 공인회계사
박기범 변호사 / 공인회계사
노형철 세무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TEL. 02 316 4251

E-Mail. gbpark@shinkim.com

TEL. 02 316 4483

E-Mail. hcrho@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